

2006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2006년 1월부터 채용시 건강진단제도가 폐지되고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가 120종에서 177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7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새해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알아본다. <편집실>

-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

그동안 적정업무 배치를 위하여 근로자 채용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채용시 건강진단 제도가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 구직급여 1일 상한액 4만원으로 인상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을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시행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사업주의 인력확보지원을 위한 사업임을 명시하고,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포함하며, 65세 이상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기업에 인력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인력 난 해소 및 청년·고령자 등의 고용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우대 지원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 훈련비 외에 훈련기간의 임금도 지원하고, 근로자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비율을 우대(50~80%→80~100%)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도 추진된다.

•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연령(54세)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조정 하는 경우 지원하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로한 자로서 직전년도 임금과 당해년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100 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006년도 달라지는 노동정책

달라지는 제도	변경일	주요변경 내용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신설>	1. 28	공무원노조의 설립과 활동, 단체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 변경	1. 1	신청대상자: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근속중인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속중인 자 지원비율: 사용하는 금액의 50% → 80% 지원규모: 5천명 → 1만명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공제부금방법 변경	1. 1	기존의 증지첩부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내역대로 금융기관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내역 및 공제부금납부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
10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7. 1	100인 ~ 299인 사업장에까지 주40시간제 확대 적용 - 동 사업장에도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 - 아울러 동 사업장에는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조정,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등도 적용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	1. 1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폐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확대	1. 1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가 현행 120종 → 177종으로 확대(71종 추가, 14종 삭제)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강화<신설>	1. 1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시 지지방법 규정 준수
영업정지 등 제재요청 대상 확대	1. 1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소홀 등으로 3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 요청 → 2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확대

정 보

달라지는 제도	변경일	주요변경 내용
사망재해발생시 가중처벌	정기국회상정중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 대상 확대	정기국회상정중	1,0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음 → 1,000인 미만 사업장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인상	1. 1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을 그 임금일액으로 함 → 상한액이 8만원으로 인상,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이 3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자 포상제 <신설>	1. 1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실업인정주기 탄력적 운영	1. 1	실업인정주기를 2주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음. 단, 특례자는 4주간 1회 → 1~4주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
국가기술자격종목 개편 <신설>	1. 1	반도체설계산업기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등 8종목 신설 임산가공기술사, 산림기술사 → 산림기술사 등 통합된 53종목에 대하여 통합된 시험과목으로 검정시행
지방기능경기대회 시·도지사 이양 <신설>	2/4분기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중소기업전문인력 지원확대	1. 1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전직지원 지원수준 인상	1. 1	이직(예정)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 소요비용의 1/2~2/3지원 → 2/3~3/4로 인상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지원 확대	1. 1	40세 이상의 실업자가 3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취업한 경우 당해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을 3개월 이상 수료자에서 1개월 이상으로 확대
외국국적동포취업종 확대	1. 1	건설업, 서비스업 취업 →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까지 확대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1. 1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절차 간소화 → 고용절차 간소화,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 삭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신설>	1. 1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였던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적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임을 명시하고,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까지 포함
공공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기능대학) 개편 <신설>	3. 1	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자평생학습지원 및 자격관리전문기관으로 특화 기능대학: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 통합
노사협력직업 훈련지원 <신설>	1. 1	노사가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비정규직 대상으로 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원

달라지는 제도	변경일	주요변경 내용
훈련계좌제 실시 <신설>	4/4분기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권 강화를 위한 훈련계좌제 시범 실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강화 <신설>	1. 1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강화 <신설>	1. 1	사업주 훈련시: 훈련비와 훈련기간의 임금지원 근로자 자율적 훈련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비율 우대(50~80% → 80~100%)
기업 등의 직업능력개발투자 촉진	1. 1	훈련비 단가체계 개편 및 단가 인상 - 직종별 기준단가에 조정계수 도입, 훈련비 단가 5.4% 인상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설>	1.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 - 특수형태 종사자 포함, 임의가입자에게는 사업주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영세자영업자 능력개발지원 <신설>	1. 1	노동부가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도입(훈련비·훈련수당 지원)
중기근로자대학학자금지원 <신설>	1. 1	인력부족 직종에 일정기간 근속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자금의 일부 지원
직업훈련 부정행위신고자 포상제 <신설>	1. 1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지급 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인증제 <신설>	1.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후 인증서 수여 및 포상,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투자 촉진 및 생산성 향상 도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신설>	1. 3	공기업, 500인 이상 대기업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관행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시행하도록 함
모성보호제도	1. 1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 급여 전부를 통상임금한도 내에서 지원(30일 기준 최고 135만원) 정상적인 분만뿐만 아니라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 부여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원	1. 1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1인당 월 80만원 지급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로 확대
계약직 또는 파견직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안정지원 <신설>	7. 1	1년 이하의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그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당해 근로자와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 종료 즉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 -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수준을 높게 책정예정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도입 <신설>	1. 1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직전년도 임금(피크임금) 대비 10/100 이상 임금이 조정되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장애인공무원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 상향조정	1. 1	종전보다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 이상 상향 조정